

#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
------	-----

발의년월일 : 1992. 6. 30

발 의 자 : 김광옥의원의외 9인

## 1. 提 案 理 由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법률 제4464호 91. 12. 31)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증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 主 要 内 容

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삽입

##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여비지급) 중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로 한다.

제 5 조(여비종류) 제1항중 “국내여행을 할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을 할때”로 한다.

제 7 조(여비지급기준)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제 8 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의 출장시의 여비) 제2항중 “부산직할시 사하구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를 “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여비지급) <u>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u> 여비를 지급한다.</p>	<p>제4조(여비지급) <u>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u> .....</p>
<p>제5조(여비의종류) ① <u>국내여행을 할때</u>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여비의 종류) ① <u>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때</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u>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u> 기준한다.</p> <p>(신설)</p> <p>② (생략)</p>	<p>제7조(여비지급기준) ① .....</p> <p><u>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현지교통비를</u> 지급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의 출장시의 여비)</p> <p>② 제1항에서 “<u>의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u>”이라 함은 <u>부산직할시 사하구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u> 말한다.</p>	<p>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의 출장시의 여비)</p> <p>② .....</p> <p>..... <u>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을</u> 말한다.</p>